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6 | 2024.07.29 (2024.07.22~07.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2~07.28)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현재 조세정책 여건으로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의 1,412건 세법개정 건의,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3건 진행,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는 28년만의 상속세 개편, 주주가치 제고 상장기업 법인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출산 장려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ODA 및 정책금융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강화, K-신도시 수출지원 등 해외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여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치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 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발의 또는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7/29~8/2) <본회의>는 7/29(월) 방송관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계속), <정무위>는 티몬·위메프 미청산 사태 관련 현안질의(7/30),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계속), <행안위>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7/29), <산자중기위>는 7/29(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보고 등, 7/30(화)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업무보고, <정보위>는 7/219(월) 간사선임,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7/30(화) 통일부 등 업무보고, <여가위>는 8/1(목)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9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14
-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산업통상자원부) 18
-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중소벤처기업부) 2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행정안전부) 25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2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25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농림축산식품부) 2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농림축산식품부) 2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2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2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3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3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3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3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4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4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7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7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3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3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3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3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4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4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42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4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4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48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4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4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9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5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5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5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53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3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5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55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0인)	5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5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56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5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2~07.28)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배포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4-07-25

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한바, ‘22년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23년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 세법을 개정할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경제 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조기시행 과제 수시 개정 및 조치들을 완료하였음

정부는 현재 조세정책 여건으로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의 1,412건 세법개정 건의,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3건 진행,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현정부 출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한데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8년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바,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 50%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 평가까지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키로 하였으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증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속세 최고 구간은 30억 초과 ‘세율 50%’에서 10억 초과 ‘세율 40%’로 하향조정하였음. 다만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다음 개편으로 미뤄짐

그리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하였으며, 이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 유명무실해진 ‘자녀공제’를 현실화하였음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하였으며, 주주환원을 늘린 밸류업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받을 현금배당액 중 일부를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하였음. 또한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해 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음

결혼·출산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부부합산 100만원)씩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하였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선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키로 하였음.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미반영되었으며,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 191개 항목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등 관계법을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168개(88%)이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23개(12%)는 현금영수증 적용 대상 확대 등

<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정책
목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추진 전략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 활성화	✓ 결혼·출산·양육 지원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비과세·감면 정비 ✓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법개정 상세 내용 >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 자 고 용
지 역 발 전
촉 진

-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자 본 시 장
활 성 화

-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②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 원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③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효율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 ▶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제고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 ▶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An illustration depicting financial concepts. A man in a green shirt and a woman in a red shirt are looking at a document. The man is holding a magnifying glass over the word 'TAX' on the document. The document also features a line graph with an upward arrow and the word 'PAY'. Surrounding them are several stacks of gold coins. Floating around the scene are various financial symbols: dollar signs (\$), a thumbs-up icon, a warning sign (!), and a graph icon.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faint plus signs (+) and a dotted line with 'W' symbols.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① 납세자 편의 제고
- ② 납세자 권익 보호

A bar chart with four bars representing the years 1980, 1990, 1995, and 2000. The bars show a general upward trend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a degree in the U.S. The 2000 bar is the tallest, followed by 1995, 1990, and 1980.

2)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시

시군청등	소재지	수
------	-----	---

신규취득 주목요건	소재지 규모 취득기간	수도권밖의 지역 전용면적 85㎡, 취득가격 6억원 이하 24110~25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현행	개정안
최대주주 주식 알증명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종소·증권거래법상 5년안원인 미만) 주식 등 제외	제도 폐지

②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1)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해당시:

	한정	개방
기업상속 공제 취득대상	① 중소기업 ②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모든 중소·중견기업
공제한도	기업종류기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① 월평균 소기업월무주주갑 기업종류기간 공제한도 10~20년 6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② 기업활동전력구 창업·인정기업 원도 업

2)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사업주 자산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업무용 자산 및 임대부동산, 대여금 등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제외

(3)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법인/공제 세출공제	대상	주주환원율 확대 대상기업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적용기간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5%(공제대상 총 주주환원금액의 1%) '2511~'2712.31(34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주환원율 확대 대상기업의 개인주주
	대상소득금액 분리과세 세율 적용기간	차년도 전과연도 A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 분리과세시 9% 종합과세시 25% '2611~'28.12.31 지급연도: 배당금

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1 시행 예정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안	
	일반	일반투자자형	국내투자자형 (신설)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7천만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사전·농가인정 400만원)	500만원 (사전·농가인정 1,000만원)	1,000만원 (사전·농가인정 2,000만원)
금융소득 과세기준액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일유 미과세액 연 14% 복리과세

* (한도초과분) 9% 분리과세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 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상제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간	3년(24~26년 혼인신고분)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신속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동일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한)	40만원(한)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제지원 내용	현행	개정안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2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합니다.

1 수영장·체육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도시·공원·역물간 미술관·영화관람권* (*충당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동일
공제율	30%	수영장·체육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제한사항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동일

2 근로장려금(E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 혼합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총 소득기준 ← 동일 ← 동일 4,400만원

3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현행	개정안
공제부금 납입연도	분기별 300만원	← 동일
공제적용 소득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① ← 동일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연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연도 ← 동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 상가임대료 인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	적용기한
상가임대료 인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1년 연장 (~25.12.31)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 합니다.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현행	개정안
1) 상속·증여세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인당 5천만원	개정안 인당 5억원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현행	개정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① ② 중 선택 ③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④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은 ③ 기준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국외배우주주 지분율 50% 초과, 국외부동산과업에 주권 사업 또는 부동산관리업에 해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동성식료자 5년 미만인 법인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2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를 조정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가맹사업자(매출 10억원 이하)	← 동일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 동일
공제율	13%(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 동일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개정안
공제액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양도소득세 2만원/건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200만원 500만원

3 세원투명성을 제고합니다.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현행	개정안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리전권 등)	주식 등 추가 (한도일천 1년 이내 증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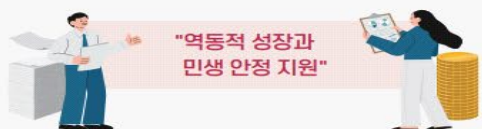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기부금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선택)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 ① (대상) 사전 등록한 국내의 전자상거래업체 ② (합치) 등록업체는 물품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③ (효과)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방법 등 적용	
--	--

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현행	개정안
1)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액에 경정청구 허용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



관계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 ODA 및 정책금융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강화
- K-신도시 수출지원 등 해외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2024-07-23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해외건설 수주플랫폼’, 7.11),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24.2~5월)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 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세계인구] 0.7%/연 ↑ (’20)78억명 → (’50)97억명 [도시인구] 1.37%/연 ↑, 44억명 → 67억명

** 개도국 : (’20) 457억불 → (’21) 762억불 → (’22) 917억불 → (’23) 860억불(* 세계은행)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 ’19~’23)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높다(10% 이상)는 업계 평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 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
-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 마련
-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활성화

※ (예: 철도) 공공(공단건설·코레일운영)+민간(ENG社. 철도차량기업, 시스템장비 업체 등) 동반 진출

(지원) 철도
계획 수립
철도공단

⇒

(수주) 철도
건설 본공사
민간기업

⇒

(지원) 신호
체계 수립
공단·코레일

⇒

(수주) 신호
시설 본공사
민간기업

⇒

(지원) 차량
공급 컨설팅
코레일

⇒

(수주) 철도
차량 공급
민간기업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 추진

-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 더욱 강화
-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 → 50%)하고 대주주로서 참여 허용(현재 불가)
-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

② 패키지 지원 강화

-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하여 프로젝트화 촉진
-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
-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

* 건설보조금(VGF) : 정부에서 건설초기에 건설보조금 형태의 일시금으로 프로젝트 SPC에 지급 고정대금(AP) : 건설된 시설 운영수입은 정부가 수취, 시설 유지관리 대가로 사업자에 고정대금 지급

< 예시 : 도시개발사업 - EDCF 연계 >



-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1조원 규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
-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 지원
-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 추진

* 구성 : KOICA(무상 ODA),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 펀드)

< PIS 2단계 펀드 개요 >

- 정부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하위펀드를 조성하고, 하위펀드를 통해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출자 등 투자



* ① 블라인드 펀드 : 투자자모집 후 사업을 발굴, ② 프로젝트 펀드 : 사업발굴 후 투자자를 모집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 추진
-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 지속 지원

< UGPP 기반 도시개발 사업모델(예시: 베트남) >

절차	사업기반마련	⇒	사업발굴·계획수립	⇒	사업구조 구체화 + 인허가 + 착공
주체	한국토부, 베건설부		한공공기관, 베지방성		한공공+건설사, 베건설부+지방성
세부 내용	MOA 체결 (스마트시티 및 Social Housing 공급) * LH↔베지방성 간 MOU (정상 임석)		A 건설 프로젝트 B 건설 프로젝트 C 건설 프로젝트		- SPC 출자 - 자금조달 (정책자금 메뉴판) - 공공기관(LH 등) - 사업관리 - 건설사 - 시공, 분양
법정부 지원	· 정책자문 - EIPP, KSP 등		- MP 수립·타당성조사 - EIPP, KCN(계획형) - KOICA·국토교통ODA - KIND수은 F/S		· 스마트서비스 : KCN(솔루션형) · 금융조달 : EDCF, KIND 투자-PIS, ECA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 포함
-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7곳)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 지원

*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사우디, UAE, 페루

해외건설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불 달성

전략	세부 추진과제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① 정상외교 성과창출 위한 전략국가·프로젝트 선정 ②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계획 수립
	공공기관 역할강화	① 사업 기획 및 초기 참여기반 마련(설계·자문 등) ② 공공기관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공공예타 등)
	KIND의 지원강화	① KIND의 대주주 참여 허용 ② 투자요건(시공수주 위주) 완화 및 기업 EXIT 지원
패키지 지원 강화	복합지원 패키지	① 유·무상 ODA, 수출금융 등 연계 지원 ② 리스크관리 강화(조사·검증 지원, MDB 공동참여 등)
	PIS 2단계 펀드 조성	① 총 1.1조원 펀드 조성('24년 모태펀드 4.4천억원) ② 분야별 투자할당 완화 등 운영개선
	시범사업 발굴	① 실무기관 협의체 운영(ODA-PPP 협의체) ② 협의체 등 통한 시범사업 발굴
도시개발 분야 특화진출	G2G 프로그램	① 고위급 방문 등 G2G 협력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 ② 공공기관이 전 단계에 걸쳐 주도적 사업 추진
	성과창출 및 확산	① 정상외교성과 기반 선도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 ②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술 연계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강화	인센티브 강화	① 투자개발사업 실적 시공능력평가 반영 ② 수주통계 반영을 위한 실적보고 가이드라인 정비
	기업편의 제공	① 인프라협력센터의 기업 현지활동 지원 강화 ② 타 산업과 동반진출을 위한 공동 수주활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며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함

* 자동차,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기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1.4. 출범, 위원장:산업부장관 · 대한상의회장)를 확대 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음.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글로벌 탄소규제 특징 및 국내 영향

☞ 탄소규제가 ①자국내→자국외(글로벌무역), ②사업장내→사업장외(Scope3), ③생산과정→순과정 탄소발자국(공급망)으로 확대 적용되는 양상

* Scope1: 직접배출량, Scope2: 간접배출량, Scope3: 그 외 공급망 배출량

☞ 탄소규제의 이면에는 각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 존재 → 제조업과 수출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는 적극 대응 필요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할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 방식(‘데이터 스페이스’*)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용을 높임
- 우선적으로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全) 업종 · 전(全)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 EU(Gaia-X · Catena-X), 일본(Ouranos Ecosystem)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의 플랫폼 구축 중

** 5대 업종: ①배터리, ②자동차, ③가전, ④철강·알루미늄, ⑤섬유

<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 플랫폼 개념도 >



②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산업단지·지자체 등과의 협업 지원,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 확대, 부처간 '협업에 산 제도'를 활용한 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예정

③ 'FTA 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하여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원

- 대응이 시급한 5大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

④ 법·제도·표준·기업·인력 등 기반 강화

• 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령 정비

- 플랫폼 절차사항(운영주체·방식), 지원사업(인센티브) 등 구체화

* △산업디지털전환법: 플랫폼 구축 근거는 기 존재 → 플랫폼 운영주체·방식 구체화,
△친환경산업법: 플랫폼 지원사업 근거 등 인센티브 구체화

- 기업간 탄소데이터 공유에 수반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하위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부유권해석 등 검토

• 공급망 탄소중립 관련 표준 개발

- 데이터 플랫폼,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등 관련 국제표준 개발

* 디지털제품여권 등 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작업반 구축 및 추진계획 수립(~'24.下)

• 탄소규제 대응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인증·컨설팅 업계와의 협력·소통 강화 및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해외 진출 촉진

- GX(그린전환)와 DX(디지털전환)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

* △석·박사급 전문인력 육성(대학원 지정), △검증심사원 교육 확대(재직자 과정 등)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 시장 참여자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방법론 및 표준 개발 지원

↳ 자발적 탄소시장: 법적 규제(배출권거래제 등)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 추진 전략 >

비전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을 통한 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
목표	■ 산업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배출량 산정과 효과적 감축 ■ 산업의 그린전환 선도 및 탄소규제 대응 신산업의 성장
주요 추진 전략	1.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2. 공급망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효과적 감축 3.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전달체계 마련 4. 법·제도·표준·기업·인력 등 기반 강화 5.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 서울 홍대 인근, 부산 북항 2곳에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2024-07-25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함

* 스테이션 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2017년 설립)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한국형 스테이션 F’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로,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됨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측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됨.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조성됨. 중기부는 약 100여 곳의 부지 탐색 후, 전문연구기관(KDI)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권역을 선정하였음
- 홍대 권역은 기술 스타트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함
- 또한, 지하철역(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기차역(KTX),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을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최근 테크 중심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됨
- 글로벌 빅테크기업(애플기업)과 전문 VC, AC 등 혁신 주체, 그리고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Deep Tech Society)를 구현함
- K-컨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Entertainment Technology) 지원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임

② 비수도권 조성지 : 부산 북항

- 비수도권의 글로벌 창업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됨.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7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하였고,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산 북항이 선정되었음
- 부산 북항 폐창고는 ‘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임
- 부산은 비수도권 도시 중 창업 생태계의 성장성이 높고, 북항 인근은 청년·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문화·공원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KTX 부산역과 도시철도 중앙역이 1km 이내, 김해공항 30분 이내)을 갖추고 있어 글로컬(Glocal) 창업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임
-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Work+Entertainment)와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제2007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41조의2, 제41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호스팅서비스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하되,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특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49조제2항제1호, 제49조의2 신설, 제65조제5항 등)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기자재의 부적합 보고를 한 자가 스스로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 (법률 제2006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를 정하고,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 및 별표 5의2 신설)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이 외의 재산상 손실 및 생명·신체상의 손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하고,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 및 부상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함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②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사항 (제77조의3제4항 및 제77조의4제2항 신설)

-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명칭·모델명, 기자재의 고유번호,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등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자기적합확인을 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③ 부적합 보고 및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제77조의14제2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를 하고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정처분이 취소인 경우에는 4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61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공동 소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제출 절차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제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조의2 신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 사업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유하고,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유하도록 하되, 공동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협의하도록 함

②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33조의3 신설)

-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③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3조의4 신설)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2024-07-31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예정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65호, 2024. 7. 30. 공포, 7. 31.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를 공동 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제36조의2 신설, 제65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예정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8조제3항, 제44조의2 신설, 제21조제12호 신설)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와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의 범위를 정하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 및 제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및 지정 요건(제4조 및 제5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업무 등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으로 정함

③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9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의 범위를 생육환경 데이터, 생육 상태 데이터 및 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등으로 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④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지정 해제 절차(제10조 및 제1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해제 사유를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2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24-07-26 시행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8호, 2024. 7. 23. 공포, 7. 26. 시행)이 제정됨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와 방법 및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②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4조 및 별표 1)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응시자격 등 (제5조 및 별표 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
-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

④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제7조 및 별표 3)

- 시설원예기술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할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교육과정을 해당 분야의 스마트농업의 이해, 정보통신기술시설·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등으로 정하고, 세부 교과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을 정하고,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마련 (제10조의5제1항 신설 및 별표 1의2)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14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정함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을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으로 정하고, 합격 결정 기준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함
- ②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절차 구체화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산림청장은 국산목재인지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으면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

목재인지 여부 및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함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6 마목 및 바목 신설)**

-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으로 정함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신설)**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②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의 대상 등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로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 현황조사에는 가로수의 수종 등 일반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세부진단조사에는 가로수의 생육·피해 상태,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다만,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예정)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 됨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위탁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1호의2, 제31조제1항제5호, 제31조제2항제2호 삭제, 제31조제4항 등)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건설기계의 범위에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조의2제1항제2호, 제52조의3, 제60조의3제2항 등)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예정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9조의3제1항, 제89조의3제2항, 제89조의3제3항 삭제 등)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25 시행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수산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또는 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추가하고, 수산부산물을 제철용 소결제뿐만 아니라 제강용 소결제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제3호나목, 별표 제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2조 삭제, 제57조제1항, 제61조제1항제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9조의4제1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23. ~09.02.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 (안 제6조제5항제7의2호 신설)

- 수직농장·식물공장*(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인공 광원,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관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의 시설을 모두 갖춘 것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3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24. ~09.02.
---------	-----------------------------	------------------------

제조·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

이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및 제2조)
- ②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③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 (안 제7조)
- ④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 (안 제19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전화: 044-203-5766, 팩스: 044-203-480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24.
~09.02.

제조·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

이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 ② 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안 제2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에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 ③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중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식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tel:044-203-5766) (전화: 044-203-5766, 팩스: 044-203-4808)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7.22.
~08.31.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19. 시행)됨

이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하여야 하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규모, 수립범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안 제4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안 제4조의3)
- ③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 마련 (안 제4조의4)
- ④ 실증특례 책임보험 기준 보완 (안 제8조제1항제3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tel:044-201-3862) (전화: 044-201-3862,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22.
~08.31.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19. 시행)됨

이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의 설계 원칙을 규정 (안 제2조의2)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tel:044-201-3862) (전화: 044-201-3862, 팩스: 044-201-5588)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24.
~09.03.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정하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 (안 제13조의4제8호)
- ②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4조의7)
- ③ 표준약정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의8)
- ④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 (안 제27조제3항)
- ⑤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음 (안 제27조제4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 044-204-7924, 팩스: 044-204-7949\)](tel:044-204-7924)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22.
~09.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안 제16조제2항제14호)
 -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1, 팩스: 02-2100-2933\)](tel:02-2100-299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07-23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안 제22조제3항 삭제 및 제23조제1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6 제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 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07-24 발의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5조 및 제8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등 15인)

2024-07-22 발의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주조(鑄造)·용접(溶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등 10인)

2024-07-26 발의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2024-07-22 발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7-23 발의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정무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2024-07-23 발의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약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C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④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안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둠
-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둠

⑤ 공공금융지원 (안 제7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

⑥ 금융회사의 책무 (안 제8조)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⑦ 채권발행 (안 제9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⑧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안 제10조)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및 제19조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07-25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조의5)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4 제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신설)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 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 (안 제161조제1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③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 (안 제429조제3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④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안 제429조제4항)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1인)

2024-07-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07-22 발의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7-22 발의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 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 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97조의9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2024-07-23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 4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 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안 제10조제1항)**
 -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p씩 상향함
-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제1항)**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함
-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 (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024-07-25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4-07-23 발의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안 제1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7-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임

한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종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이었으나 2021년 말 현행법 개정으로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상한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당시 개정법률은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기간 상한이 여전히 5년으로 적용되고 있음

다만,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의 기간 설정에 대해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납세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안 제71조제6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3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및 제79조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4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6조제4의2 및 제89조의3제2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4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 (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 제7항 신설)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40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0조의3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3인)

2024-07-23 발의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 (안 제9조)
- ④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19조)
-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22조)
- ⑪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07-25 발의

우리나라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24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35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 (안 제53조제1항)**
- ②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 (안 제53조제4항)**
-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제5항)**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2024-07-25 발의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안 제45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07-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른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07-2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2024-07-24 발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안 제49조제8항)

-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53조의4 신설)

-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53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07-25 발의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7/29(목)	안전심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7/30(화) 14:00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과방위	전체회의	7/29(월) 14:00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계속)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안위	전체회의	7/29(월) 10:00	- 경찰청장 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30(화) 미정	- 경찰청장 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7/29(월) 10:00	-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전체회의	7/30(화) 10:00	-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정보위	전체회의	7/29(월) 14:00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보고 (국가정보원)
	전체회의	7/30(화) 14:00	- 업무보고 (통일부 등 6개 기관)
여가위	전체회의	8/1(목) 09:30	-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29(월) 10:30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안규백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9(월) 14:00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	이용우·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9(월) 14:00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정태호·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29(월) 15:00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최보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9(월) 15:30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고동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30(화) 10:00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환·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30(화) 14:00	2024 UNI-KLC 토론회 - 주4일 노동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박홍배·김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31(수) 10:00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김승수 의원실, 한국광고총연합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7/31(수) 14:00	제22대 국회의 국민안전 추진방향	이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31(수) 14:00	중독 치료·회복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31(수) 14:00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윤종오·황운하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8/01(목) 10:00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환경부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01(목) 11:00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	박찬대·박희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01(목) 14:00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윤종오·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01(목) 14:00	영화발전기금 2025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	김재원·임오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8/02(금) 10:0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황윤하·안태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7/29(월)	「THE 현안」 제21호 발간 - 글로벌 지수를 통해 본 대한민국 2024년	국회도서관	
	7/31(수)	「Data & Law」 2024-8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7/31(수)	「금주의 서평」 제687호 발간 - 도서명 :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 저자 :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7/31(수)	「NABO Focus」 제74호 발간 -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22(월)	「THE 현안」 제20호 발간 - 우리동네 빈집, 누군가의 빈집	국회도서관	
	7/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1호 발간 -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7/24(수)	「금주의 서평」 제687호 발간 - 도서명 :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 저자 :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7/25(목)	「현안, 외국에선?」 제87호 발간 -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		
	7/26(금)	「NABO Focus」 제73호 발간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7/22(월)	「NARS 입법정책」 제153호 발간 -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7/23(화)	「이슈와논점」 제2261호 발간 - 성심당 대전역점 갈등 사례로 살펴본 역사(驛舍) 입점 수수료 개편방안		
	7/23(화)	「특별 보고서」 제6호 발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7/24(수)	「이슈와논점」 제2262호 발간 - 도시가스·난방요금에의 원가반영,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7/24(수)	「NARS 현안분석」 제325호 발간 -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7/24(수)	「NARS 브리프」 제43호 발간 -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7/26(금)	「이슈와논점」 제2263호 발간 -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중립적 중재자인가, 당파적 지도자인가?		
	7/2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3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2~07.2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6(금)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배포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